

허 가 조 건

1. 전라남도 「남도소리올림터 설치·운영 조례」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2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.
3. 사용기간 중 남도소리올림터의 설비, 시설, 비품을 파손,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.
4. 사용자는 남도소리올림터에 반입한 각종물품(전시작품, 기구, 비품 등 일체)의 보관, 관리,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이의 도난, 분실,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남도소리올림터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5.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비할 경우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후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합니다.
6.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
7.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